

평창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348
----------	-----

제출년월일 : 2024. .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대행 할 경우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규정하여 공·사유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을 효과적으로 수행

2. 주요내용

조례제정 목적,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안 제1조,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2025년 예산에 437,000천원 반영요청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4. 8. 7. ~ 2024. 8. 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평창군 공고 제2024-1146호, 산림과-2156(2024. 8. 6.)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기획실-9238(2024. 6. 17.)호]

3)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기획실-9238(2024. 6. 17.)호]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가족복지과-1044(2024. 7. 4.)호]

5) 법제심사 : 적정[기획예산과-123(2024. 9. 13.)호]

6)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원안의결[기획예산과-4934(2024. 9. 26.)호]

평창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 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 그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 따른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제2조 관련)

사업비	수수료
5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96을 곱한 금액
50억원 초과 7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93을 곱한 금액
7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83을 곱한 금액
100억원 초과 15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68을 곱한 금액
15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63을 곱한 금액
2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51을 곱한 금액
3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39을 곱한 금액
4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32을 곱한 금액
500억원 초과 7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25을 곱한 금액
700억원 초과	사업비에 1천분의 23을 곱한 금액

비고

1. 사업비는 관리업무를 대행한 산림사업의 정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사업비가 50억원 이하인 경우의 수수료는 현지여건 등 관련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비에 1천분의 161을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붙임1]

관계법령 발취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에 대하여는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산림사업 시행을 위한 산림소유자의 동의 및 협의 등 관리업무를 대행(이하 “관리업무대행”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리대행자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에 따른 위탁수수료 발생
 - 관련조문 : 조례(안) 제2조(관리업무대행 수수료)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시행에 따른 위탁수수료
-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위탁수수료 2025년도 조림·숲가꾸기 사업비 기준으로 작성

나. 추계 결과

(단위: 천원)

구 분	산출기초	비고
총소요액	437,000천원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위탁수수료	<input type="checkbox"/> 조림, 숲가꾸기 위탁 대행 수수료 · 4,550,000천원(조림 1,200,000, 숲가꾸기 3,350,000) x 96/1,000 ≒ 437,000천원	

※ 당해연도 사업량에 따라 위탁수수료 증감

다. 재원조달 방안 : 자체재원 조달

3.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도시안전국 산림과장 이 성 모
연락처	(033) 330 - 245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계
세 입		-	-	-	-	-	-
세 출		437,000	440,000	440,000	440,000	440,000	2,197,000
위탁수수료		437,000	440,000	440,000	440,000	440,000	2,197,000
재원 조달		437,000	440,000	440,000	440,000	440,000	2,197,000
의 존 재 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자 체 수 입	소 계	437,000	440,000	440,000	440,000	440,000	2,197,000
	지방세	-	-	-	-	-	-
	세외수입	-	-	-	-	-	-
	군비	437,000	440,000	440,000	440,000	440,000	2,197,000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